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921
----------	-------

발의연월일 : 2026. 7. 13.

발 의 자 : 박균택 · 김현정 · 어기구
허영 · 허성무 · 이상식
김영배 · 박정 · 이성운
홍기원 · 김동아 · 박상혁
주철현 · 양부남 · 조인철
정준호 · 박지원 의원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글로벌 항공·해운 산업의 탈탄소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지속가능항공유(SAF) 및 바이오선박유 등 석유대체연료의 국제적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석유정제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여 혼합하는 경우에도 제조업 및 수출입업 등록을 중복적으로 요구하고, 국내 유통용 제품에 적용되는 품질검사 및 혼합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임.

이에 석유정제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등록을 면제하고, 수출용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와 혼합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등 관련 규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또한,

석유정제공정의 원료로 투입되는 친환경정제원료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고 친환경 연료 산업의 시장 선점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1호, 제9조의2제1항, 제26조의2제1항, 제31조제3항, 제32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호의2에 따른 친환경정제원료로서 석유정제공정의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조의2제1항 단서 중 “제2조제5호의2가목의 사업만을 하는 경우(제26조에 따른 품질보정을 하여 석유를 거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가 국제석유거래업을 하는 경우
2. 제2조제5호의2가목의 사업만을 하는 경우(제26조에 따른 품질보정을 하여 석유를 거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6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의 품질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혼합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1. 석유대체연료를 혼합한 석유 제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여 시범보급사업 또는 시험연구 등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및 목적에 따라 혼합하는 경우
3.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1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수출(석유제품과 혼합하여 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목적으로 석유대체연료를 구매하거나 인도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제1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산업통상부장관이 탄소중립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범보급사업 또는 시험연구 등의 목적으로 석유대체연료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4.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석유대체연료를 혼합한 석유제품을 수출할 목적으로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는 경우

부 칙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5호의2가목의 사업만을
하는 경우(제26조에 따른 품질
보정을 하여 석유를 거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신고하
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② . ③ (생 략)

제26조의2(석유대체연료의 혼합)

①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
출입업자는 제조 또는 수입한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인도하
기 전에 해당 석유제품에 제24
조제1항의 품질기준에 따라 석
유대체연료를 혼합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
-----.

1. 제5조제1항에 따른 석유정제
업의 등록을 한 자가 국제석
유거래업을 하는 경우

2. 제2조제5호의2가목의 사업만
을 하는 경우(제26조에 따른
품질보정을 하여 석유를 거래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6조의2(석유대체연료의 혼합)

① -----

-----.
다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제24조제1항의 품질기준
을 적용하지 않고 혼합하는 행
위를 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 ③ (생략)

제31조(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
등) ① · ② (생략)

③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업자는 석유대체연료를 판매하거나 인도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석유관리원 또는 품질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서 신설〉

1. 석유내체연료를 혼합한 석유
제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여 시범보급사업 또는 시험연구 등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및 목적에 따라 혼합하는 경우

3.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1조(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다만,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

업자가 수출(석유제품과 혼합

하여 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을 목적으로 석유대체연료

를 구매하거나 인도받는 경우

④ ~ ⑦ (생략)

제32조(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
입업의 등록 등) ① 석유대체
연료 제조·수출입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략)

<신 설>

<신 설>

② ~ ④ (생략)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32조(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
업의 등록 등) ① -----

-----.

1. · 2. (현행과 같음)

3. 산업통상부장관이 탄소중립
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
정하여 시범보급사업 또는 시
험연구 등의 목적으로 석유대
체연료를 제조하거나 수입하
는 경우

4.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
입업자가 석유대체연료를 혼
합한 석유제품을 수출할 목적
으로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
는 경우

② ~ ④ (현행과 같음)